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표준설명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표준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KOFR 사용기관이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참고자료이며, 그 작성, 설명 및 고지 등과 관련한 책임·의무는 해당 KOFR 사용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 동법 시행령,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및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p>I.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내용 및 용도</p> <p>1.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정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란 ❶한국예탁결제원이 ❷기관간조건부매매(「금융투자업규정」 §5-1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거래를 ❸기반으로 산출한 ❹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21.9.29일 지정)를 말합니다. ❺이 경우 KOFR는 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의미합니다.</p> <p>2.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용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적용 계약의 범위 예금, 적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외국환 거래,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종합투자계좌, 어음관리계좌, 어음담보대출, 공제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④ 및 감독규정 §13)</p> </div>	<p>III.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p> <p>1.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정방법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1) 기초자료(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 전체를 환매이율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2) 개별 환매이율 중 극단 금리의 거래를 상·하위 각 5%씩(매수가액 기준) 제거 (3) 매수가액 기준 가중 평균금리 계산</p> $\text{한국무위험지표금리} = \frac{\sum_{i=1}^N r \cdot PV_r}{\sum_{i=1}^N PV_r}$ <p>(r = 개별 기초자료의 환매이율, N = 개별 기초자료의 수, PVr = 개별 환매이율이 적용된 기초자료의 매수가액)</p> </div> <p>2.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절차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1) 기초자료의 수집·검증 및 확정 (2)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정(전산시스템) (3)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재산정(OA 프로그램) (4) 산정 및 재산정 결과의 상호비교·검증 및 확정</p> </div> <p>3.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기본적으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은 정확하고 정밀한 절차·방법에 의해 수행되나 다음과 같은 잠재적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1) 산정 방법에 내재된 가정이 실제 자금조달비용의 가정과 다를 수 있는 점 (2) 기초자료 중 이상거래(매수가액, 환매이율 등이 과도하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거래)의 수가 급증하여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p> </div>
<p>II.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의 내용 및 선정기준</p> <p>1. 기초자료의 정의 기초자료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에 사용되는 자료로서, 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 관련 매수가액, 거래기간, 매입증권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p> <p>2. 기초자료의 구성요소 기초자료는 ❶매수가액, ❷환매이율, ❸매입일 및 환매일, ❹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의 증권 종류, ❺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 관리번호, ❻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의 표시통화 명칭, ❼증권식별번호 및 ❽그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됩니다.</p> <p>3. 기초자료의 선정기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p>IV.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p> <p>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산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왜곡 또는 조작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p>

<p>(1) 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일 것 (2) 기관간조건부매매 거래를 통해 취득 또는 이전하는 증권이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일 것 (3) 해당 거래가 익일물일 것 (4) 해당 거래에 따른 매수가액이 원화일 것 (5) 해당 거래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도증권의 인도 및 매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것 (6)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기초자료에 의한 거래일 것</p>	<p>(1) 해당 오류, 왜곡, 또는 조작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왜곡, 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②오류 등의 정정 및 이에 따른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재산출 ③재산출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수정 공시 (수정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④(한국예탁결제원의)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 오류 등의 발생 사실 및 처리 내역을 보고 ⑤(중요 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p>
<p>(2) 해당 오류, 왜곡, 또는 조작 등이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한국예탁결제원의) 해당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오류 등 신속한 정정 및 재제출 요구 ②오류 등의 정정 및 이에 따른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재산출 ③재산출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수정 공시 (수정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④(한국예탁결제원의)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 오류 등의 발생 사실 및 처리 내역을 보고 ⑤(중요 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p>	<p>(3)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 교란 발생, 기관간조건부 매매 거래 빈도의 급감,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산출업무 담당직원 등에 의한 파업이 있는 경우</p> <p>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시하는 대체금리를 산출업무 중단 기간에 한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 금융 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V.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변경사항 및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p>	<p>VII.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p>
<p>1. 중요 변경사항의 범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의 방법·절차 관련 사항으로서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의 요건 및 구성 요소 (2) 기초자료의 수집·확정의 방법 및 절차 (3)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정 방법 및 산출 절차 (4) 국가 비상사태, 불가항력 등 예외상황에서의 산출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5)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공시 주기 및 방법 (6) 既공시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수정 공시 요건 및 수행 절차·방법 (7)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 (8) 급격한 시장교란 등의 비상사태시 대응 방법·절차</p> <p>2. 중요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관련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금융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중요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변동으로 해당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할 수 있음 (2)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왜곡, 조작 등이 발생하여도 수정 공시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역시 변동하지 않음 (3) (1)의 결과로 실제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한 경우 해당 금융 계약의 갱신 또는 일부 조항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p>	<p>1. 비상사태로 인한 산출업무 중단 절차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중요 지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2) (한국예탁결제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중요 지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신고 (6) 산출업무의 he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p> <p>2. 산출업무 중단 관련 공시 사항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업무 중단을 검토하는 경우 공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2) 산출업무 중단 기간 (3) 산출업무 중단 기간 중 사용가능한 대체금리 (4) 산출업무 중단 기간의 비상연락망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산출업무 중단 관련 주요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안내사항</p> <p>3. 산출업무 중단시의 대체금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한국은행이 산출·공시하는 은행·증권금융 차입콜금리 (2) ((1)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산출업무 중단 기간 시작일의 직전 영업일에 공시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3) ((1)과 (2)를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요지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리</p>
<p>VI. 국가 비상사태, 불가항력 등의 상황 및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p>	
<p>1. 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의 범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p>	

- | | |
|--|--|
| (1) 국가 비상사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산출업무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2) 산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테러 또는 산출업무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파손 등이 있는 경우 | |
|--|--|

▣ KOFR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of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